의안번호	2201473
의 뢰 인	한병도의원
회 답 일	2024. 9. 13.
추계번호	24D1721

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

【비용추계서】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Ⅰ. 비용추계 결과

❑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마을기업의 육성·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, 마을기업지원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억 1,7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2억 7,300만원(연평균 5,4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종합계획 수립, 마을기업지원위원회 설치·운영 (안 제6조 및 제9조)	217	14	14	14	14	273	54

주: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,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Ⅱ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조(종합계획의 수립)	-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기업 육성·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	의무규정
2	안 제6조(시·도계획의 수립)	-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·특별자치시장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함)은 마을기업의 육성·지원을 위한 시·도계획을 수립·추진함	의무규정
3	안 제7조(실태조사)	-행정안전부장관 및 시·도지사는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및 시·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·추진하기 위하여 마을기업의 활동과 사업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함	의무규정
4	안 제8조(중앙마을기업육성위원회)	-마을기업의 육성·지원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마을기업육성위원회(이하 "중앙위원회"라 함)를 둠 -중앙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	의무규정

5	제9조(시·도별 마을기업육성위원회)	-시·도지사는 시·도별 지원계획과 관할 구역 내 마을기업의 지원시책 등의 심의를 위하여 시·도에 시·도별 마을기업육성위원회를 둘 수 있음 -시·도별 마을기업육성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함	재량규정
6	안 제10조(마을기업의 지정 등) 및 제11조(마을기업에 대한 지원)	-행정안전부장관은 요건을 갖춘 자를 마을기업으로 지정하여 육성·지원할 수 있음 -국가는 마을기업의 설립·운영에 필요한 경영·기술·세무 등에 대한 전문적 자문 및 정보제공,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 등에 대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	재량규정
7	안 제13조(마을기업의 날)	-국가는 마을기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마을기업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마을기업의 날로 하고, 마을기업의 날부터 1주간을 마을기업 주간으로 함 -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기업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함	재량규정
8	안 제14조(마을기업 정보시스템 구축 등)	-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기업 정책의 수립·시행 및 통계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·가공·분석하기 위하여 마을기업 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음	재량규정
9	안 제15조(마을기업지원센터의 설립 등)	-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와 마을기업 및 제16조에 따른 마을기업지원기관과의 연계 업무 수행을 위하여 마을기업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음 -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기업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10	안 제16조(마을기업지원기관의 설치)	-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마을기업지원기관을 설치하거나,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의 대학, 연구원,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을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-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기업지원기관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11	안 제18조(포상)	-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기업의 육성과 장려를 위하여 사업성과와 운영현황이 우수한 마을기업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음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5조(종합계획의 수립)	○	-
2	안 제6조(시·도별 지원계획)	-	미대상: 행정안전부장관이 안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지원계획을 추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,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내용을 참고하여 기존의 예산과 인력 내에서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
3	안 제7조(실태조사)	-	미대상: 행정안전부의 「2024년 마을기업 육성사업[1] 시행지침」에 따르면, 기초자치단체가 보조사업 점검 시 실태조사를 병행하고 있음
4	안 제8조(중앙마을기업육성위원회)	○	-
5	제9조(시·도별 마을기업육성위원회)	×	시·도별 마을기업지원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어 시·도별 마을기업지원위원회의 구성, 운영경비 등을 추정 곤란
6	안 제10조(마을기업의 지정 등) 및 제11조(마을기업에 대한 지원)	×	제정안의 시행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마을기업 육성사업[2]에 비해 확대될 사업의 범위, 규모 등을 추정 곤란
7	안 제13조(마을기업의 날)	×	마을기업의 날 및 마을기업 주간 지정에 따른 행사 규모 등을 추정 곤란
8	안 제14조(마을기업 정보시스템 구축 등)	×	마을기업 정책 관련 통계 등의 범위, 내용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정보시스템 구축 규모 등을 추정 곤란
9	안 제15조(마을기업 지원센터의 설립 등)	×	마을기업지원센터의 설립·지정·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, 마을기업지원센터의 규모·위치 등을 현 시점에서 추정 곤란
10	안 제16조(마을기업 지원기관의 설치)	-	미대상: 현재도 행정안전부의 「2024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」에 따라 시·도지사가 마을기업지원기관을 설치·운영 중임
11	안 제17조(포상)	-	미대상: 현재도 행정안전부의 「2024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」에 따라 우수마을기업을 선정하여 최대 7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음

1) 행정안전부는 「고용정책기본법」 제6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)과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7조(보조 또는 융자)에 근거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부사업 마을기업육성사업(3131-301)에 2024년 26억 9,500만원을 편성하여 운영 중임

2) [참고 1] 제정안과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육성사업(3131-301)의 비교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❑ 안 제5조에 따른 마을기업 육성·지원에 관한 종합계획(이하 “종합계획”이라 함)은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고,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행정안전부가 수립한 종합계획 수립 평균 예산을 준용함

○ 법안이 시행되는 첫해에 수립한다고 가정

❑ 안 제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설치되는 중앙마을기업육성위원회(이하 “중앙위원회”라 함)는 전체 위원이 20명이고, 이 중 위촉위원은 14명으로 가정

○ 연 4회 회의를 개최하며, 회의참석 및 안건검토수당은 회당 25만원으로 가정

○ 회의참석 및 안건검토수당은 추계기간 동안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

❑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제정안의 부칙과 법안 심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종합계획의 수립(안 제5조)

❑ 안 제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억 300만원으로 추계됨

○ 추계의 전제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2021년~2023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 예산 평균금액[3](2억 300만원)을 준용함

○ 추계의 전제에 따라 2026년에만 연구·용역 비용이 발생

3) 행정안전부의 2021년~2023년 기본계획 수립 관련 연구용역 평균금액(자료: 행정안전부)
-2021년 어린이안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(2억원), 2022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(3억 6,000만원), 2022년 온천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(1억원), 2023년 재난안전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(1억 5,000만원)

[표 2]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종합계획 수립 (안 제5조)	203	0	0	0	0	203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나. 중앙위원회 설치·운영(안 제8조)

❑ 안 제8조에 따라 중앙위원회의 위촉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,400만원 등 총 7,000만원으로 추계됨

○ 추계의 전제에 따라 14명의 위촉위원에게 회당 25만원의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연 4회 회의를 한다고 가정

[표 3] 중앙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중앙위원회 설치·운영 (안 제8조)	14	14	14	14	14	7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다. 추계 결과

❑ 제정안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마을기업지원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억 1,7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2억 7,3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6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종합계획 수립	203	0	0	0	0	203
중앙위원회 설치·운영	14	14	14	14	14	70
합 계	217	14	14	14	14	273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Ⅳ. 부대의견

❑ 본 추계 결과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,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Ⅴ. 작성자

❑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지수현	김안나

❑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지수현	02-6788-4831	zisu37@nabo.go.kr

[참고 1] 제정안과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비교: 재정수반요인을 중심으로

❑ 제정안과 현재 사업의 비교

○ 현재 사업내용 및 추진체계는 행정안전부의 「2024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」을 참고하여 작성함

구 분	제정안	2024년 시행지침
마을기업 지원	(안 제11조) – 경영·기술·세무·노무·회계 등에 대한 전문적 자문 및 정보 제공 – 전문인력의 육성 및 마을기업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– 시설비 등의 지원·융자 – 부지구입 융자 – 마을기업의 생산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촉진 – 사회보험료의 지원	– 사업비 지원 – 판로지원, 교육, 경영 컨설팅, 네트워크 구축 등
마을기업 육성 추진체계 등	– 실태조사(안 제7조)	– 실태조사(연1회): 사업 추진 점검과 병행
	– 중앙마을기업육성위원회(안 제8조)	– 없음
	– 시·도별 마을기업육성위원회(안 제9조)	– 없음
	– 마을기업의 날(안 제13조)	– 없음
	– 마을기업지원센터의 설립 등(안 제15조)	– 없음
	– 마을기업지원기관의 설치(안 제16조)	– 마을기업 지원기관(시·도)
	– 우수 마을기업 포상(안 제17조)	– 우수 마을기업 선정(최대 7천만원 지원)

자료: 행정안전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

❑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 현황

○ 사업비 지원

– (보조금 규모) 최대 3회, 1억원(1회차 5천만원, 2회차 3천만원, 3회차 2천만원)

– (자부담) 보조금의 20% 이상(청년마을기업은 10% 이상)

< 마을기업 성장단계별 지정·지원 체계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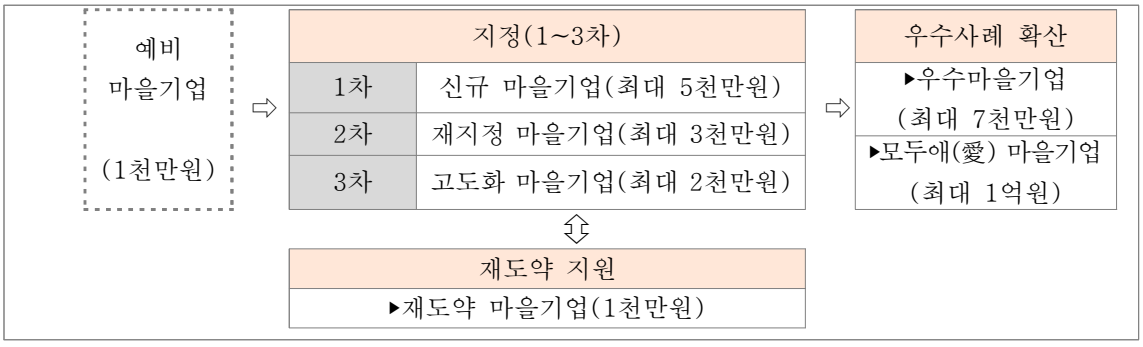

자료: 행정안전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